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피해자등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요청 근거 마련 등〉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9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8.
3. 회부연월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영안소 등에 안치하는 경우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사상자의 가족 등이 사상자의 이동동선 및 현재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상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 및 제79조제6호의2 신설).

II. 검토의견

1. 재난피해자들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요청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경우 사상자의 성명, 연락처, 응급처치 기록, 의료기관 이송 기록 및 현재 위치 등이 포함된 정보를 기록·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재난피해자들이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 및 제79조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37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2037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u>제74조의5(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관리) 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제52조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수집·관리하여야 한다.</u> <u>1. 사상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u>

현행	개정안
	<u>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u> 2. <u>사상자의 응급처치 기록</u> 3. <u>사상자를 의료기관 및 임시영안소 등에 이송한 기록</u> 4. <u>사상자의 이동 동선 및 현재 위치</u> 5.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u>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사상자의 이송정보를 기록 및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관계인은 정당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③ <u>재난피해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요청하면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관리, 요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u>

현행	개정안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u><신설></u> 6의2. (생략) 7. (생략)	<u>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9조(벌칙) -----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 5제2항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u> 6의3. (현행 제6호의2와 같음) 7.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52조¹⁾는 재난현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군·구긴급구조통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요원·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7.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운용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⑥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단장(소방서장)이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현장지휘를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중앙통제단장(소방청장)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이 법 제52조 및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²⁾에 따라 재

-
- ⑦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⑧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 ⑨ 각급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 ⑩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제5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⑪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각각 본다.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중앙통제단장

나.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

다. 통제단장(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명령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 선착대의 장 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이하 “긴급구조지휘대”라 한다)의 장

제20조(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①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지휘·조정·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사상자의 수에 따라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통제단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구의 지원과 의료인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제단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설치에 필요한 인력·시설·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받아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의료소를 설치해야 한다.

④ 의료소에는 소장 1명과 분류반·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을 둔다.

⑤ 의료소의 소장(이하 “의료소장”이라 한다)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관할 보건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사람이 의료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
- 4. 삭제 <2020. 11. 25.>

⑥ 의료소장은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응급의료자원의 관리, 사상자의 분류·응급처치·이송 및 사상자

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지휘·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장응급의료소에는 분류반·응급처치반·이송반을 두게 되는데, 분류반은 사상자를 검진하여 중증도 분류표를 부착한 후 긴급·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사망자·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하고, 응급처치반에서는 인계받은 긴급·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응급처치사항을 중증도 분류표에 기록하여 이송반에 인계하며, 이송반은 인계받은 사상자를 이송 조치하되, 사상자 이송현황과 중증도 분류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함(제20조제4항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현황파악·보고 등 의료소의 운영 전반을 지휘·감독한다.

⑦ 분류반·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에는 반장을 두되, 반장은 의료소 요원중에서 의료소장이 임명한다.

⑧ 의료소장 및 제7항에 따른 각 반의 반원은 별표 6의2에 따른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⑨ 의료소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3명, 간호사 또는 1급응급구조사 4명 및 지원요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통제단장은 필요한 의료인 등의 수를 조정하여 편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 소방공무원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여 의료소를 운영하기 전까지 임시의료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면 사상자 현황, 임시의료소에서 조치한 분류·응급처치·이송 현황 및 현장 상황 등을 의료소장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통제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분류반의 임무) ③ 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7의 중증도 분류표 총 2부를 가슴부위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다만, 중증도 분류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 및 기록·저장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가슴부위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증도 분류표 부착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말기 등을 통하여 저장된 사상자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중증도 분류표를 부착한 사상자 중 긴급·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사망자와 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보다 이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긴급·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이송반으로 인계할 수 있다.

제23조(응급처치반의 임무) ④ 응급처치반은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인계받은 긴급·응급환자의 응급처치사항을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에 기록하여 긴급·응급환자와 함께 신속히 이송반에게 인계한다.

제24조(이송반의 임무)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이송반은 사상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차 및 영구차를 확보 또는 통제하고, 각 의료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분류반 및 응급처치반이 인계한 사상자를 이송조치한다.

③ 사상자를 이송하려는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상자 이송현황을 지체 없이 이송반에 제출해야 하며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 및 구급일지를 기록·보관한다. 이 경우 사상자를 이송하는 이송반장 또는 이송반원은 중증도 분류표(전자장치는 제외한다) 중 1부는 이송반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이송의료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인계해야 한다.

[중증도 분류표 및 사상자 이송현황]

중증도 분류표(제22조제3항 관련)					사상자 이송현황														
중증도 분류표			일련번호		수신 : _____ 발신 : _____														
보행여부: 가능 / 불가능			호흡: 정상 / 비정상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주증상 (손상원인)	이송 병원	중증도 분류 (해당란)			발견 자점	이송수단 (해당란)		출발 시간		
맥박: 정상 / 비정상			의식: 정상 / 비정상								중 증 도	분 류	사 망		1 차	2 차		기 타	
분류자: 0 ● 1 ● 2 ● 3 ●					1		남/여										:		
분류시간:					2		남/여										:		
이름: _____ 나이: _____ 성별: 남 / 여					3		남/여										:		
발견된 장소:					4		남/여										:		
주요 손상명 및 처치					5		남/여										:		
					6		남/여											:	
주요 손상명 및 처치					7		남/여										:		
					8		남/여											:	
생체징후: _____					9		남/여									:			
혈압: _____ / _____ 호흡: _____ 맥박: _____ 의식: _____					10		남/여										:		
구급차: 119 / 119 외					11		남/여										:		
이송의료기관: _____					12		남/여										:		
이송(출발)시간: _____					13		남/여										:		
0 사 + 망 0 I 간 중 급 I II 중 중 급 II III 비 중 급 III					14		남/여										:		
					15		남/여												:
					16		남/여												:
					17		남/여												:
					18		남/여												:
□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9		남/여										:		
					20		남/여											:	
					21		남/여											:	
					22		남/여											:	
					23		남/여											:	
					24		남/여											:	
					25		남/여											:	

개정안은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수집·관리하도록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재난피해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사상자의 가족 등이 사상자의 이동동선 및 현재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의 기록 및 수집·관리
는 현재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령)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재난피해자 발생 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0조제6항³⁾ 및 「2024년 국가긴급구조 대응계획⁴⁾」 제4장제4절에 따라 ① 현장 응급의료소의 소장이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사상자의 성명, 성별, 연령, 증상, 이송병원, 발견지점, 이송수단 등 이송현황을 관리하고 ② 경찰이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지한다고 설명하면서⁵⁾

추가적으로, 개정안 제74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사상자의 이동 동선 및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인명구조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긴급 재난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둘째,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 중 일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법령 내용은 각주 2) 참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 계획임.

5) 경찰청이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변사사건처리규칙(경찰청훈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변사사건처리규칙」(경찰청훈령)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말한다.

나. 자연재해, 교통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 화재, 익사 등 사고성 사망

제20조(연고자 확인·통지)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는 변사자의 연고자를 확인하여 변사 사실을 통지하고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재난현장에서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⁶⁾

2024년 9월,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에 대한 정보(이송 정보 포함)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는 바⁷⁾,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119대원이 이송한 환자(부상자)의 이동 정보 취득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이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 제74조의5제3항에서는 ‘재난피해자등’이 사상자의 응급 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요청하면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하여, 개정안은 사상자의 응급 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재난피해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피해자등은 이 법 제74조의3제1항⁸⁾에서 “재난으로 인하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751,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 발췌

7) 동 법률안은 2024년 9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24년 11월 21일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음.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

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환자 또는 부상자 자신이므로 본인의 의료 기록을 본인이 요청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음.

사상자의 성명·연락처·주소, 응급처치 기록, 이송기록 등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⁹⁾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개정안은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의무 주체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난현장의 긴급구

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2. (생략)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조활동 지휘는 원칙적으로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하게 되나, 예외적으로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무주체에 이들을 포함하여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각급통제단장¹⁰⁾)”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셋째, 개정안 제74조의5제1항제4호에서는 기록 및 수집·관리 정보로 ‘사상자의 이동 동선 및 현재 위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긴급성이 요구되는 재난 현장에서 모든 사상자의 이동 동선 및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인력 운용 측면 등에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직접 운용하는 119구급차 이외의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사상자를 이송하는 경우¹¹⁾에는 긴급

10) 이 법 제52조제5항에서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을 “각급통제단장”으로 약칭하고 있음.

- 이 법 제52조제5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주 1) 참조

1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제20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재난 현장에서 이동 동선 및 현재 위치를 각급통제단장이 수집·관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구급차 운용 현황(2018년~2022년¹²⁾)>

(단위: 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19구급대	1,420	1,474	1,558	1,579	1,625
국가·지자체	309	305	420	422	424
응급의료기관	522	491	496	488	474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제외)	2,434	2,330	2,198	2,056	1,929
기타시설	99	111	109	111	117
군	2,025	1,968	1,811	1,823	1,822
경찰(교도소 포함)	52	56	56	54	59
민간이송업체	935	1,004	1,018	1,024	1,131
비영리법인 이송업체	4	1	0	9	28
기타	0	0	2	3	3
계	7,800	7,740	7,668	7,569	7,612

※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2023 응급의료 통계연보」

넷째, 각급통제단장이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 및 제공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12) 2023년도 이후의 통계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음.

참고로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등이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피해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이동경로·진료일시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① 정보주체에게 재난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② 해당정보를 누구든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정보가 파기 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4조의3제4항)¹³⁾.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 2023.12.26.>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들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피해자들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대비·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섯째, 개정안은 벌칙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 제79조제6호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관련한 지역통제단장의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재난 상황에서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사상자의 이송정보 수집 협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그러나, 개정안 제74조의5의 입법취지는 사상자 이동동선을 사상자의 가족 등이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¹⁴⁾ 이는 직접적인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¹⁵⁾,

응급 상황에서의 환자 이송이라는 상황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환자 이송과 동일하다고 보이는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의료기관에 벌칙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¹⁶⁾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14)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15) 일반적으로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정비”하고 있음

*출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법 등 4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202262, 정부 제출) 제안이유.

16)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제79조제6호의2의 입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소방청은 개정취지는 타당하나 인명구조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매우 복잡하고 혼잡한 긴급재난 현장에서 사상자의 이동 동선과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영안소 등에 안치하는 업무는 현행 법령 및 매뉴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